

# 『VC벤처펀드 특별보증』 지원계획 공고

「기술기반 벤처·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(’21.1.13)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‘21년 VC벤처펀드 특별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7월 5일

기술보증기금 이사장

## 1 지원개요

- **(지원목적)** 기술기반 벤처·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벤처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(이하, '창투사') 등 벤처캐피탈(이하, 'VC')의 신속한 펀드결성 지원
- **(지원규모)** 200억 원 이내
- **(지원대상)** 한국모태펀드(이하, '모태펀드') 출자사업 운용사로 선정된 창투사, 유한책임회사(이하, 'LLC')형 VC 중 '21.9월 이후 출자금 납입이 가능한 VC
- **(지원 제외대상)**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 - 중기부에 본건 펀드결성을 등록한 VC
  -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(보증금지기업·제한기업)[참고1]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[참고2] 영위기업
  -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[참고3] 미충족기업
  - 상시종업원 1,000명 초과 또는 총자산 1,000억 원 초과인 기업
  -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주채무계열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

- 기타 관련법규, 기술보증기금 내규 저촉 등으로 지원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
- ※ 지원 제외대상 여·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,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

## 2 | 보증지원 내용

### □ (지원한도) 운용사(VC)당 최대 50억 원

- 펀드당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최대 30억원에서 운용사 출자 예정 금액의 80% 이내

\* 운용사당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최대 50억 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신보의 보증금액(유동화 기초자산 편입금액 포함)과 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임  
 \* 신보(보증재단 포함)거래기업은 전액상환 하거나 기술보증기금으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특별보증 지원 가능(중복보증 불가)

### □ (자금용도) 모태펀드의 출자펀드(자펀드) 결성을 위한 운용사의 출자금

### □ (우대사항) 보증비율 100%(전액보증), 보증료 1%(고정보증료율)

## 3 | 의무 이행사항

### □ 자료제출

- VC벤처펀드 특별보증 각 단계별 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하는 반기별 영업보고서\*와 펀드 청산보고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\* 투자자 정보 등 삭제 후 제출 가능

### □ (우선상환) 운용사 투자금 회수시 보증부대출을 우선 상환하셔야 합니다.

- **(성과공유)** 펀드 청산시 운용사 성과보수의 일부를 성과공유금으로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
성과공유금 산출 방식
㉠ '성과공유금' : '성과보수'의 10%에 '레버리지비율'을 곱한 금액 ㉡ '성과보수' : 한국벤처투자가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공고시 제시한 성과보수 ㉢ '레버리지비율' : 투자조합 운영기간(출자금 납입시부터 분배시까지) 동안 운용사의 출자금 중 기보 보증부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
산출 예시
<b>(가정)</b> 운용사 성과보수 10억원, 운용사 출자금 20억원(자기자금 10억원, 보증서대출금 10억원), 투자조합 운영기간 8년, 보증이용기간 4년(4년뒤 전액해지) ✎ 성과공유금 : 성과보수 10억원 × 10% × 레버리지비율 25%[(10억원/20억원) × (4년/8년)] = 25백만원

## 4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

- **평가절차 및 추진 일정**

구 분	주요 내용	시 기
사업공고	▶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등	'21.7.5(월)
↓		
온라인신청·접수	▶ 온라인 신청 ( <a href="http://www.kibo.or.kr">www.kibo.or.kr</a> )	'21.7.5(월) ~'21.8.2(월)
↓		
① 1차 평가 (요건검토)	▶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*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저축 여부 등	8월
↓		
② 2차 평가 (신용도검토·보증심사)	▶ 신용도 검토 ▶ 현장평가 및 보증심사	8월
↓		
③ 최종평가 (보증심사위원회)	▶ 보증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라 평가 * 투자현황, 투자능력, 재무현황 등	8월
↓		
최종선정	▶ 최종 선정기업 발표(개별통지)	9월
↓		
보증지원	▶ 보증서 발급	9월 ~

\*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평가 기준

### ○ 신용도 검토 기준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증취급 불가	
가.	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<b>연체대출금</b> 보유
나.	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최근 <b>1년 이내</b> 다음 사실 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<b>당좌부도</b>(1차 이상)</li> <li>(2) <b>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</b></li> <li>(3) 기금, 신보, 보증재단의 <b>보증사고</b>(사고유보 포함) <b>발생</b> 또는 보증사고발생기업의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</li> <li>(4)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<b>권리침해</b></li> </ul>
다.	심사기준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<b>“소비자거래기록정보”</b> 보유
라.	심사기준일 현재 <b>조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</b>
마.	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감사보고서상 <b>감사의견이 부적정</b> 또는 <b>의견거절인</b> 경우

### ○ 최종평가(보증심사위원회) 기준

평가기준	배점	세부 평가지표
투자현황 (25점)	10	청산완료조합 현황 - 투자총액, 수익률, 투자업체수 등
	8	운영중인 조합 현황 - 결성(납입)총액, GP출자금, 보유현금, 수익률 등
	7	최근 투자현황 - 직전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현황
투자능력 (25점)	10	투자심사 능력 - 주요기술(투자심사)인력 현황
	8	투자수익률 추세 - 최근 3년간 해산조합의 투자수익률 추세
	7	투자자산의 건전성 - 투자자산 평가내역
재무현황 (20점)	20	VC의 재무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- 신용평가등급, 총자본 순이익률, 자기자본 순이익률, 자기자본 비율, 부채비율, 자본잠식 여부 등
특별보증 지원 적합성(30점)	30	VC벤처펀드 특별보증 취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- 펀드의 주 투자대상, 벤처캐피탈의 현행 재무상태 및 그간 투자실적, 특별보증 이외 자금조달 대안 및 회수가능성 등
총 점		100

## 5

##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**(신청·접수기간)** 2021년 7월 5일(월) ~ 8월 2일(월) 15시까지

□ **(신청방법)** 기보 홈페이지(www.kibo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### <온라인 신청 절차>

① 'www.kibo.or.kr' 사이트 접속 → ② '디지털지점' → ③ '회원가입/로그인' → ④ '창업·투자' → ⑤ 'VC벤처펀드특별보증/신청하기' → ⑥ '양식다운로드', '신청하기' → ⑦ 기본정보 입력 → ⑧ 투자조합 결성제안서, 투자조합출자계획서 등 업로드(용량제한 각 항목당 15MB 유의) → ⑨ 제출('신청내역 조회'에서 신청 확인)

- \* 자세한 사항은 '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[별첨1]' 참고
- \*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시 등록
- \*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인정
- \*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·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
- \* 신청·접수 후 반드시 **접수완료 상태를 확인**하실 것(접수증 출력 가능)

□ **제출서류**

### 제출서류 목록

- ① 투자조합 결성제안서, ② 조합현황 총괄, ③ 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의 투자회수실적 [출자사업 신청시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한 자료]
- ④ 투자조합출자계획서 [별첨2]
- ⑤ 사전동의서 [별첨3]
- ⑥ 최근월말('21.6.30)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
- ⑦ 주주명부
- ⑧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(舊: 법인등기부등본)
- ⑨ 감사보고서(2018~2020년) (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)

※ 평가·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

## 6 유의사항

-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법규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.
-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선정평가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, 선정 이후에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선정 후 3개월이내 보증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승인권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사업일정상 보증서 발급은 9월 이후 계획하고 있으나, 신청기업 수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 7 문의처

<b>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센터</b> <b>벤처혁신사업부</b>	02-2280-4865, 4867 051-606-7671, 7674
--	--

- 참고
1.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
  2.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  3.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
- 별첨
1.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<보완예정>
  2. 투자조합출자계획서 양식
  3. 사전동의서 양식

< 보증금지기업(기술보증규정 제13조) >

1.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
2. 제1호의 자가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3.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
  - 가.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
  - 나.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

< 보증제한기업(기술보증규정 제14조) >

1. 휴업 중인 기업
2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3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4.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  - 가. 대표자
  - 나. 실제 경영자
  - 다. 따로 정하는 "기준"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
6. 파산·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7.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\*
  - \*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,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
8. "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"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
  - \* 보증브로커 개입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, 금품제공기업, 부정청탁기업 등
9. 기금,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(이하 "신보"라 한다) 또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(이하 "보증재단"이라 한다)의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)
10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11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 - 가.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기술보증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 - 나.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 - 다.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 - 라.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
1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  - 가.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술보증규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나.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(공동경영자 포함)
  - 다.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
14.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
## 참고2

##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
구 분	세부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	
		新	舊
도박 게임 관련	·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※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	3340	3340
	·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	46463, 47640	46463, 47640
	· 도박기계 임대업	69390	69390
	·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	75999	75999
	·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	91113	91113
	·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	91249
사치 향락 관련	· 주류 중개업	46102	46102
	· 귀금속 중개업	46109	46109
	· 주류 도소매업	46331, 47221	46331, 47221
	· 귀금속 도소매업	46492, 47830	46492, 47830
	· 주점업	5621	5621
	· 노래연습장 운영업	91223	91223
	· 무도장 운영업	91291	91291
	· 마사지업	96122	96122
부동산 관련	· 주거용 건물 임대업	68111	68111
	·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	68121	68121
	·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, 부동산 투자 자문업	68221, 68222	68221
기타	·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	59142	59142
	· 전화방	91229	91229
	· 복권 발행 및 판매업	91241	91241
	·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	96992	96992

## 참고3

##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
구분	세부항목
(1개라도 "부"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)	①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, 실제 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※ 단, 실제 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
	② 실제 경영자가(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) 금융질서문란,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
	③ 실제 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
	④ 실제 경영자(본인이 실제 경영자인 기업 포함)의 정책금융(보증부대출 포함)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